

收復地域內所有者未復舊土地의復舊登錄과保存登記등에관
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
(황영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724
----------	-------

발의연월일 : 2019. 5. 30.

발의자 : 황영철 · 박명재 · 박덕흠
심기준 · 경대수 · 박성중
김진태 · 김기선 · 이종명
김정재 · 황주홍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0조에 따르면, 1991년 12월 31일까지 소유자복구등록을 신청하지 않거나 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에서 신청이 기각된 소유자미복구토지에 대해서는 이 법 유효기간 만료 후 무주지로 보아 국유화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인을 위촉하지 못하여 소유자복구등록 신청이 불가능했던 지역의 토지는 국유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현재 양구군 해안면 소재의 토지(3,429 평지)가 여기에 해당되며, 이 토지는 국유화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로 인해, 해당 토지의 경작자들이 재건촌 조성 당시(1956년, 1972년) 약속대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국유화가 제한된 상황에서는 주민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없는 실정이고, 이뿐만 아니라 무

주지 경작권의 불법 매매와 국유지와 무주지 경작자 간의 대부금 격차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보증인을 위촉하지 못하여 소유권복구등록 신청이 불가능했던 지역을 국유화 대상에 포함하는 동시에,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는 즉시 매각처분을 할 수 있게 하고, 해당 토지의 경작자에게 매각·임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복지역 내 무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20조).

收復地域內所有者未復舊土地의復舊登錄과保存登記등에관
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

收復地域內所有者未復舊土地의復舊登錄과保存登記등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20條 본문 중 “아니하거나”를 “아니하거나(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증인을 위촉하지 못하여 소유자복구등록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取得한 날로부터 10年間은 賣却處分을 하지 못한다”를 “「국유재산법」 제1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취득한 날부터 매각처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매각범위, 매각허용 대상자, 대금의 납부방식 등 매각 또는 대부의 내용 및 조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신고토지등의 국유화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

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의 방법으로 매각 또는 대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매
각범위, 매각허용 대상자, 대금
의 납부방식 등 매각 또는 대
부의 내용 및 조건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